#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68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주호영·최은석·김태호

김용태 · 김성원 · 김민전

장동혁 • 박준태 • 조지연

이인선 · 김기웅 · 윤상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기준연령을 1981년 제정 이래 변함없이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 대부분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 또한 과거보다 크게 향상됨에 따라 현행 노인 기준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및 노인복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기준연령을 1년에 1세씩 상향할 경우, 일부 연령층의 노인복지 혜택 개시 시점이 장기간 지연되어, 정당한 기

대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기준연령을 1년마다 0.5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등).

#### 법률 제 호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5세"를 "70세"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65세"를 각각 "70세"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65歲"를 각각 "70세"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65歲"를 "70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65歲"를 각각 "70세"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5세"를 "70세"로 한다.

제3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65세"를 "70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5조제 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1 항제1호·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6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및 제3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그 연령에 관 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연령에 4.5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연령에 4세를,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3.5세를,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3세를,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2.5세를, 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는 2세를, 2032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는 1.5세를, 2033년 1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는 1세를, 2034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는 0.5세를 각 밴 연령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제1조의2(정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	5
자에 의한 <u>65세</u> 이상 노인에	<u>70세</u>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u>.</u>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第25條(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	第25條(생업지원) ①
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	
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	
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는 <u>65세</u> 이상 노인의	<u>70세</u>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	
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	2
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	
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u>65</u> <u>세</u>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 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생 략)

- 第26條(敬老優待) ① 國家 또는 度 地方自治團體는 <u>65歳</u> 이상의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 方自治團體의 輸送施設 및 古 宮・陵園・博物館・公園 등의 公共施設을 無料로 또는 그 利 用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者에게 65歲이 상의 者에 대하여 그 利用料金을 割引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있다.

# ③ (생 략)

第27條(健康診斷 등) ① 國家 또 를 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u>65歲</u> 이상 의 者에 대하여 健康診斷과 保 健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이

③ (현행괴	
	優待) ①
	<u>70세</u>
2	
	<u>70세</u>
③ (현행괴	· 같음)
27條(健康	診斷 등) 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 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特別市長·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市長·郡守· 區廳長(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老人에 대 한 福祉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 65歳 이상의 者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者를 관계公務 員 또는 老人福祉相談員으로 하여금 相談・指導하게 하는 것
  - 2. 65歲 이상의 者로서 身體的 ·精神的 ·經濟的 이유 또는 環境상의 이유로 居宅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者를 老人住居福祉施設 또는 在家老人福祉施設에 入所시키거나 入所를 委託하는 것

 1. <u>70세</u>
2. <u>70세</u>

- 3. 65歲 이상의 者로서 身體 또는 精神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經濟的 이유로 居宅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者를 老人 醫療福祉施設에 入所시키거나 入所를 委託하는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u>65</u> 歲 미만의 者에 대하여도 그 老衰現狀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③ ④ (생 략)
-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저 절차 등)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u>65세</u>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 16. (생략)
  - ③ ~ ⑥ (생 략)

3. <u>70세</u>
②
<u>70</u>
<u> 세</u>
,
③・④ (현행과 같음)
네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70</u> 세
1. ~ 1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u>65</u>	제39조의9(금지행위) <u>70</u>
<u>세</u>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	<u>세</u>
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b>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